

케이블 사업 운송약관

가모리판광 주식회사

(적용범위)

제 1 조

당사가 경영하는 케이블사업에 관한 운송계약은 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 풍습에 따릅니다.

담당자의 지시

제 2 조

고객님의 안전한 운송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담당자(이하 “담당자”라고 칭함)가 지시를 합니다. 이 지시를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.

(운송의 수락)

제 3 조

(운송의 거절)

제 4 조

당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운송을 거절합니다.

- (1)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
- (2)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
- (3) 당 운송에 관하여 고객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경우
- (4) 당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.
- (5) 고객님의 상태 등에서 운송상에 안전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.
- (6) 위험물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
- (7)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운송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.
- (8) 전 각 호로 꼽는 경우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.

(승차권의 발매)

제 5 조

(승차권 등의 효력)

제 6 조

당사는 승차권 등을 티켓 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.

- ① 승차권 등은 티켓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.
- ② 당사가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한 경우, 변경전에 발행한 승차권은 승차권에 기재된 운임 액수에 상관없이 통용기간 내에는 유효합니다.
- ③ 당사에서 유효한 승차권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는 무효입니다.
- ④ 승차권 등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무효입니다.
 - (1) 승차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사용할 경우
 - (2) 시즌권을 기명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경우.
 - (3) 개조 또는 변조 및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.
- ⑤ 승차권 등의 전매는 금지합니다. 전매 한 승차권 등은 잘못된 것으로 회수합니다.

(승차권의 제시 등)

제 7 조

(운임, 요금 및 적용방법)

제 8 조

(운행중지의 경우 운송도중의 승객에 대한 취급)

제 9 조

당사는 승객의 승차시 개찰 게이트에서 승차권 확인 또는 랜섬을 합니다.

당사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임, 요금 및 적용방법은 별도로 기재된 운임표 및 별도로 정한 적용방법에 따릅니다.

천재지변 및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케이블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 승객에게 운행재개 후에 유효한 승차권의 무상교부 등 필요한 계속운송 조치를 행합니다.

(운임의 환불)

제 10 조

천재지변 및 당사의 책임에 의해 케이블 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해 환불을 해드립니다. 그러나 바람과 눈 등에 의해 운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행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당사의 운송에 관한 책임은 승객이 제 7 조의 행위를 행하였을 때를 시작으로 하차하였을 때 끝납니다.

승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- (1) 스키 리프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승하차 행위
- (2) 스키와 스노보드 및 스키 리프트를 혼드는 행위
- (3)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 등으로 스키 리프트시설을 두드리는 행위
- (4) 옆으로 타는 등 위험한 자세로의 승차행위
- (5) 그 밖의 안전운송을 방해하는 행위

(승객에 대한 책임)

제 13 조

당사는 케이블의 운행에 의해 승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(1) 케이블의 운행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규정한대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케이블 시설에 결함 및 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증명되었을 경우.
- (2) 사고가 해당 승객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되었을 경우.

(소지품 등에 대한 책임)

제 14 조

당사는 승객을 운송할 때 발생한 스키 및 그 밖의 소지품 등의 소실 또는 파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손실 또는 파손이 당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(승객의 책임)

제 15 조

당사는 승객이 고의 및 과실 또는 법령 및 이 운송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해당 승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.

(할증운임 등)

제 16 조

당사는 승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제 6 조 3 항 및 4 항의 규정에 의해 승차 등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는 승객에게 그 승차권 등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것과 같은 금액 이내의 할증운임 등을 요청합니다.

(관할법원)

제 17 조

우리는 이 스키장의 이용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은 이 스키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겠습니다.

부칙

약관은 2018년 11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.